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2018. 4. 17.(화), 14:00

2. 장 소: 법학관 402호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0	우정원*, 이주희, 신하윤, 정연화, 유제욱, 차안나, 문지영, 김영주, 이정화, 장남수**	김희선(간사)
불참인원	2	임원정, 안홍식	

\*의장 \*\*부의장

### 4. 안건

- 제1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의 일
- 제2호의안: 의료원 2017학년도 결산안 및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의 일
- 제3호의안: 대학 2017학년도 결산안 자문의 일

### 5. 개회선언

- 가. 의장은 오늘 부득이 임원정 평의원과 안홍식 평의원이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성원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 나. 이어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배부된 전 회의록 내용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고하도록 안내하다.

### 6. 안건심의

#### 가. 심의 및 자문사항

- 제1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의 일

(1) 의장은 제1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 안건에 대해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여 간사는 대학원 학칙 개정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2) 장남수 평의원은 제3조의 별표1, 별표2를 매년 바꾸는지 묻고 간사는 매학년도

변경한다고 답하다.

- (3) 의장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 안건에 대해 평의원들에게 모두 동의하는지 묻고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답하여 개정안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확인하고 심의를 종료하다.

□ 제2호의안: 의료원 2017학년도 결산안 및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의 일

- (1) 의장은 제2호의안 의료원 2017학년도 결산안 및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료원 참석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료원 참석자: 임기환 기획조정실장, 이병무 기획예산과장, 남상호 경리과장, 윤현태 경리과 계장)

- (2) 기획처장은 사전열람한 의료원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차변과 대변의 총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수정한 자료를 회의장에서 배부하였음을 안내하고, 회의장에서 배부된 자료로 자문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다.

- (3) 먼저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법인에서 지원받은 법인전입금 20억을 수입부에 법인기본금으로 반영하고 이를 NICU 개선공사 12억, 약제과 무균조제실공사 5.8억, NICU 의료장비 구입에 2.2억을 지출부 고정자산으로 반영하였음을 설명하다.

- (4) 이어서 경리과장이 2017학년도 결산 재무상태표 총괄표, 손익계산서 총괄표, 재무상태표 총괄표, 손익계산서 총괄표 순으로 설명하고 이후 자문을 진행하다.

- (5) 장남수 평의원은 법인기본금 전입 규모(20억)가 이전에는 없던 사안인지 해마다 발생하는 사안인지 묻고 기획조정실장은 해마다 있었던 일은 아니며 급한 사안으로 인해 법인에서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답하다. 이어서 장남수 평의원은 NICU 설치 비용이 어느 병원에 대한 예산인지 묻고 기획조정실장은 법인전입금은 목동병원 NICU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답하다.

- (6) 이주희 평의원은 결산보고에서 나타난 계속적인 부채 금액의 증가에 대해 새로운 병원으로 인한 부분이 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하나 이러한 규모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커지게 될 경우 병원 재정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새 병원 개원 초기에 약간의 유동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하다. 이에 이주희 평의원은 약간의 유동성 문제가 일시적인 것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유동성 문제인지에 대해 묻고 기획조정실장은 학교와 이화학당, 의료원이 정책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양 병원 체제를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정해진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답하다.

- (7) 의장은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경리과장은 현재 이대서울병원이 건설 중이라 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의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설명하고, 부채는 은행

차입으로 증가하고 있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현재까지 목동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답하다. 이어 경리과장은 단기간의 유동성 자금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장기간(25년)에 걸쳐서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의료원에서 이대서울병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진료 수익을 통해 부채를 상환할 계획임을 밝히다. 2016년도 250~300억원 정도의 수익에 비해 2017년도 수익이 120억원 정도로 감소한 것은 NICU 사태로 인한 것이며, 의료원에서도 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의 전략적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의료수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2018년, 2019년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다.

- (8) 장남수 평의원은 NICU 사태 이후 2018학년도 예산안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기획조정실장은 NICU 사태가 12월 중순경 발생하였고 그 전까지의 목동병원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1~2월의 의료수익 감소분이 재무상태표에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답하고 추경안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며 법인 전입금 부분만 우선 반영하여 자문을 요청드린 상황임을 설명하다.
- (9) 이주희 평의원은 병원 사태에 대한 대학 교수들의 우려를 전하며, 위기 의식을 가지고 학교와 법인, 의료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 인력을 포함한 긴급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체적인 검토 및 미래를 예측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제안하고,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경영대 교수들과 정책결정 자문회의를 5차례 정도 진행하였고 이번주 금요일에 법인에 최종 보고를 할 계획으로, 법인이사회에서 양쪽 병원 운영에 대한 큰 틀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하다.
- (10) 차안나 평의원은 2017년 결산에서 세무상 법인세 감면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50억원을 적립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요청하고 경리과장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무적인 부분으로 목동병원은 의과대학 부속이므로 교비회계에 해당하고, 교비회계는 세무적으로 고유목적(연구, 병원, 학교 시설 등)에 투자하기 위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면세되므로 정책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일부 필요함을 설명하다.
- (11) 유제욱 평의원은 2017년 기준 교원전출인건비의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2018년 전출 예상액은 얼마인지와 현실적으로 전출이 가능한 지에 대해 묻고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수당 증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다. 경리과장은 통상임금에 상여 반영이 이슈화되면서 목동병원은 통상임금에 상여를 750%포함하기로 하였는데 병원의 부담으로 일괄적으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250%씩 3년간 나누어 반영하기로 하여 2017년에 마지막 250%를 추가하면서 2017 결산 인건비에서 통상임금이 증가되었음을 설명하다. 교원전출인건비는 2016년에는 계획된 금액을 모두 전출하였으며, 2017년에는 160억원 정도 전출 예정이었으나 NICU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91억원만 전출하였다고 답하다. 이어 2018년은 124억원 전출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급격한 수익의 감소와 단기간 수익 예측의 어려움으로 수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면 유동성 문제와 더불어 전출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예산을 통해 현실적으로 반영한 후 자문을 얻고 진행할 예정임을 답하다.

- (12) 이주희 평의원은 마곡병원에 투입되는 비용과 차입 기간 및 차입 규모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경리과장은 새 병원의 건축 공정은 60%정도 진행된 상황으로 올 9월 준공, 내년 2~3월 개원 예정으로 새 병원의 규모는 전체 7천억원 공사(건물+장비)에 4천억원 은행차입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하다. 이어 경리과장은 은행 차입은 교육부 승인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2014년부터 1년마다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대금을 차입받는 형태이며 현재 3천억원정도 교육부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1천~1천3백억원 정도의 마지막 차입을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은 있으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25년으로 계획하여 2020년 이후부터 상환을 시작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13) 이주희 평의원은 NICU 사태 이전인 2016년에도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해에도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인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경리과장은 2008년 동대문 병원의 직원 흡수 및 회계 통합으로 인해 목동병원의 마이너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당시 동대문 병원 이익잉여금 -560억원, 목동병원은 57억원 정도), 고유목적준비금을 반영하고 이익잉여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답하다.
- (14) 장남수 평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여부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익에 대한 스펙트럼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기획조정실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은 5% 이하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안은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내부 구성원들의 자구책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다.
- (15) 유제욱 평의원은 부채 규모에 대해 25년 상환계획일 경우 원금 및 이자상환액은 매년 얼마를 예상하는지 묻고 경리과장은 원금과 이자액에 대한 상환액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2023년에 300~350억원 규모로 예상한다고 답하다.
- (16) 의장은 동대문병원, 목동병원, 마곡병원 등 의료원의 역사에 따른 예산안 추이, 마곡병원에 대한 장기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자문회의에 앞서 필요함을 제안하고 의과대학 및 의료원 발전에 대한 자구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다.
- (17)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어 의료원 2017학년도 결산안 및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 □ 제3호의안: 대학 2017학년도 결산안 자문의 일

- (1) 의장은 제3호의안 대학 2017학년도 결산안 자문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교 참석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재무처 참석자: 류한영 재무처장, 김윤경 재무처부처장(예산/회계/구매), 최혜련 예산팀장, 이승연 회계팀장)

- (2) 재무처장이 2017학년도 결산안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이후 자문을 진행하다.
- (3) 이주희 평의원은 전년도 자료와 비교한 자료가 제공되면 자료 검토 및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기부금, 국고 등 학교 수입 항목 및 지출부 항목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자료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묻고 재무처부처장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이며 전년도 자료를 포함하여 제공 가능하다고 답하고 참고로 전년도 결산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4) 의장은 이번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기부금 세부 내역에 대해 구두로 설명 가능한지 묻고 재무처장은 기부금 세부항목은 대외협력처에서 관리하고 있어 대외협력처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야 답변이 가능함을 설명하다.
- (5) 장남수 평의원은 등록금 수입 감소가 우려할 수준인지, 대학원 충원률이 어느정도 감소했는지에 대해 묻고 기획처장은 올해 상반기 최종 충원율은 작년보다는 다소 증가하였다고 답하다.
- (6) 차안나 평의원은 2017년 총괄표에서 고정부채수입이 3억원 감소한 것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재무처부처장은 임대업체 교체로 인한 임대보증금 지급으로 인한 것으로 임대료가 감소한 것은 아니라고 답하다.
- (7) 신하윤 평의원은 장학금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장학금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지 묻고 재무처장은 장학금 예산의 감소는 아니며 장학금 집행액이 감소한 것으로, 대학원 장학금이 예산보다 적게 집행되었음을 설명하고 등록금 회계에서 미집행 된 교내 장학금은 자금 이월하여 차년도 장학금으로 자금 집행 할 것임을 답하다. 신하윤 평의원은 대학원 장학금 미집행 사유에 대해 묻고 예산팀장은 대학원 학생수 감소 및 장학금 별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등에 의한 미집행이었음을 답하다.
- (8) 이주희 평의원은 대학원 장학금 미집행액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제한이 많은 것은 아닌지, 지급조건을 완화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재무처장은 중앙장학운영위원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하다.
- (9) 정연화 평의원은 건축물관리비와 시설용역비 감소에 대해 청소용역비나 미화특근비 감소로 기재되어 있는데 최근 용역비 인상 등이 이루진 것과는 다른 상황으로 인한 감소인지 묻고 자금팀 지급수수료 4억원 증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예산팀장은 시설용역비는 인상부분을 추경예산 편성시 기반영 하였으며, 시설용역비 예산잔액은 청소특근용역 부분이라고 답하고, 건축물관리비, 조경관리비 부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미집행된 금액이며 필요한 시기로 조정하여 집행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이어 재무처장은 자금팀 지급수수료는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수수료라고 답하다. 신하윤 평의원은 본교가 투자 수수료가 4억원이 될 정도로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지 묻고 재무처부처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50% 한도 내에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본교는 안전성을 추구하여 투자하고 있다고 답하고,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차손 방지를 위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현재는 상품 만기때 일괄 정산하고 있어 올 해 지출이 많아지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정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답하다.

- (10) 문지영 평의원은 학생경비지출의 증감세부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논문심사비는 학생들이 납부한 금액이 교수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이익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예산팀장은 논문심사비는 논문심사비용으로 모두 집행된 것이라고 답하고 학생경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재정지원, 자체재원 부분은 본교의 재정지원사업 중에 미집행되거나 집행정지된 부분, 자체재원사업 중에 사업이 이월된 부분에 해당하며 대학(원) 부분은 대학(원)으로 배정된 예산 중 미집행된 잔액이며 기관 부분은 기관 예산 중 차년도로 이월된 부분임을 설명하고, 등록금 회계에서의 학생경비 집행률은 약 95%임을 답하다.
- (11) 의장은 다음부터는 전년도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평의원들에게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의견이 없어 대학 2017학년도 결산안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 나. 기타사항

- (1) 의장은 행정조직 재정비 및 학칙 개정(안)의 사전 설명을 위해 김상택 기획처장이 출석하였음을 알리고 설명을 요청하다.
- (2) 기획처장은 행정조직 재정비(안)에 대한 주요 사항 및 검토 배경, 학칙 개정(안) 등을 설명하고 의장은 추후 학칙 개정(안) 심의를 진행할 것임을 평의원들에게 알리고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다.
- (3) 김영주 평의원은 재무처가 분리하게 된 사유에 대해 묻고 기획처장은 예산과 기획이 분리된 조직은 1975년 정부 조직이 시작이나 비효율 등의 문제로 80년대에 기획예산을 통합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본교는 90년대부터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조직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안 및 타 학교 사례 등을 참고하여 조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4) 정연화 평의원은 현재 구매팀과 관제팀이 통합하여 관리처 구매팀이 되는 것인지 묻고 기획처장은 관제팀의 업무 조정을 통해 구매팀, 총무팀 등으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설명하다. 이어 정연화 평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실 개편 및 배정 등의 일정에 대한 문의에 기획처장은 일정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준비 중이라고 답하다.
- (5) 차안나 평의원은 인권센터에 대한 총학생회의 문의에 대해 학생들에게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은 사유, 인권센터의 공개정보에 대한 처리 방침, 운영위원 구성, 예산 및 인력 배정 상황, 장애학생지원센터와 학생상담센터가 인권센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 인권센터의 역할을 위해서 본부소속부속기관이 아닌 본부와 분리되어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기획처장은 인권센터 신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자세히 알리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알릴 예정이라고 답하고 본부소속

부속기관에 두는 것 이외에는 더 독립적일 방법이 없음을 설명하다. 이어 기획처장은 예산 및 인력은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나 현재 학교 사정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하다.

- (6) 의장은 대학평의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간사는 이에 대해 설명하다.
- (7) 의장은 회의록 공개에 따른 회의록 작성에 대해 평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유제욱 평의원은 회의록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묻고 의장은 현재와 같은 형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및 자문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2018년 4월 17일

의장 우정원 우정원 